

한국모태펀드

2019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1,555억원 내외 (문화 640억원, 스포츠 100억원, 영화 100억원, 과기정통 210억원, 환경 130억원, 특허 375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결성금액의 60% 이상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필수]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 2019년 5월 21일(화), 14:00 · [선택1] 온라인 접수 : 2019년 5월 21일(화), 14:00 · [선택2] 현장 접수 : 2019년 5월 22일(수), 14:00 · 단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의 접수 마감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선정완료 이후 7월 중 접수를 마감하며 접수마감 일정을 6월 이내 공고 예정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및 회사)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및 조합 형태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하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영화계정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만 신청 가능

※ 과기정통 계정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만 신청 가능

※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분야 출자사업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공동으로 추진되며 지원하는 운용사는 본 사업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출자사업에서 모두 선정되어야 함

(단위 : 억원)

계 정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중점지원 해당여부
문화	게임	150	300	50%	○
	청년콘텐츠	190	340	56%	○
	지역콘텐츠	150	250	60%	○
	콘텐츠 민간제안	150	300	50%	○
	소계	640	1,19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100	154	65%	○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100	169	60%	○
과기정통	실감 콘텐츠	105	150	70%	○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105	150	70%	○
	소계	210	300		
환경	미래환경산업	130	217	60%	○
특허	IP 창출·보호	250	500	50%	○
	특허기술사업화 ^{주)}	125	1,250	10%	○
	소계	375	1,750		
합 계		1,555	3,780		

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500억원을 출자할 계획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문화 주1)	게임	○ 게임 관련 프로젝트 및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청년콘텐츠	○ 청년콘텐츠*기업에 지분형태(우선주,보통주,CB,BW 등)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청년콘텐츠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를 의미 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 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지역콘텐츠	○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콘텐츠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주목적 투자 의무비율의 80% 이상은 지역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및 지역 문화콘텐츠**에 투자 * 지역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문화콘텐츠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단 펀드결성일로부터 4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 지역 문화콘텐츠 : 지역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이 제작하는 콘텐츠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제작된 프로젝트, 동 지역에 전시·공연된 프로젝트를 의미. - 단,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순제작비(홍보, 마케팅비 제외)의 50% 이상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외부 회계사가 검증 필수 (회계사 관련 비용은 펀드가 부담)
	콘텐츠 민간제한 ^{주2)}	○ 문화계정이 기존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출자했던 분야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제시하여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영화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20% 이내로 제한함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사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단, 아래 중 한 개 이상 충족 시,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 1) 투자 전,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이 10% 이상인 기업 2) 투자 후,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내 스포츠 사업 영위비율(투자일이 속한 연도부터 투자기간이 종료하는 연도까지의 연평균 매출액)이 10% 이상인 기업
영화	중저예산 한국영화	○ 한국영화 100% 이상(타 분야 투자금지) 투자하되, 중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45% 이상, 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 중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 ** 저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영화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만큼 저예산 의무투자로 인정 1) 기획개발프로젝트 ^{주3)} 투자시 2)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작(독립·저예산·애니메이션·기획개발지원)에 투자시
과기 정통 주4)	실감 콘텐츠	○ 실감 콘텐츠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과기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과 펀드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관련사업 ^{주5)} 에서 지원받은 기업에 10% 이상 투자 * VR·AR·MR, 홀로그램, CG·VFX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5G, AI, IoT)을 융합한 실감 콘텐츠 관련 중소·벤처기업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과기 정통 주4)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해외진출 창업초기 기업^{주6)}에 투자시, 해외진출에 실패하더라도 약정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 단, 과기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과 펀드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 관련사업^{주5)}에서 지원받은 기업에 10% 이상 투자 * 해외진출 : 조합 해산시점 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 ②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 ③ 외자유치 또는 해외 M&A
환경	미래환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투자대상 ①,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약정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하여야 함. 단, ②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중소기업 투자의무비율(약정총액의 40%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 기업(최근 2년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의 정의에 따름)와 대표이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 포함 (약정총액 20%이내)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개발·설계·시공·개선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다만,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해외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의 합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한함
	IP 창출·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단, 기업 당 투자금의 일부(5% 또는 3천만원 중 작은 금액)가 투자기업의 IP 창출·보강·분쟁대응**에 사용될 것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 ** 출원·등록료, 대리비용, 특허 매입·라이선스 비용, 특허전략·보호 컨설팅 등
특허 주7)	특허기술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① 내지 ③에 투자. ②, ③에 해당되는 투자도 ①투자로 인정 ○ 그리고 중소기업에 37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①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대상금액의 80% 이상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 평가 기관으로 운영 중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 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다수가 평가 기관으로 운영 중 ②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375억원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특허에 대한 IP가치 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 투자 시 제외, IP프로젝트 투자 시 선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수익화 프로젝트에 투자. 단,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 이외의 산업재산권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수익화 프로젝트에는 투자 불가 ③ 해외IP수익화^{주8)}에 80억원 이상, IP출원지원 등^{주9)}에 40억원 이상 투자

주1)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 의무 비율

- 약정총액의 30% 이내에서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 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 출자자 관련 투자집중 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주2) 문화계정 콘텐츠 민간제안 분야의 경우, 주목적 투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해당 분야를 모태펀드가 시행했던 출자사업 차수(0년 0차 정시/수시 출자사업)을 기재해야함. 또한, 2개 이상 주목적 투자 대상을 제안하는 경우, 각 분야별 의무투자 비율 명시

주3) 영화계정 기획개발투자 시 준수사항

- 기획개발투자는 '시나리오 완성이전 단계' 투자에 한함.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과 그 계열사에서 선행 투자된 프로젝트 투자 금지
- 기획개발 프로젝트별 3억원 초과 투자 금지
- 기획개발 투자 후 90일 이내 크랭크인(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고시 기준) 시, 주목적 의무투자 불인정

주4) 과기정통계정 공통 적용사항

- 디지털콘텐츠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를 말하며, 차세대방송(ICT+방송), 엔터테인먼트(ICT+게임), 정보콘텐츠(ICT+Life), E-Learning, SNS 콘텐츠(ICT+정보공유) 등
- 영화·드라마 프로젝트의 경우는 순제작비의 15% 이상이 CG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CG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만 투자 가능
- 디지털콘텐츠 산업 이외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SW 등 정보통신산업에 한하여 투자 가능
-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정총액의 20%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디지털콘텐츠기업 투자 시 해당 기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실감 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 분야의 경우 프로젝트 방식의 투자는 주목적 및 특수목적 투자 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함.(단, 투자는 가능함)

주5) 관련사업 사례 : 차세대융합형콘텐츠산업육성,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디지털콘텐츠원천기술개발, 창의적콘텐츠제작기반조성 사업

주6)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주7) 특허계정 제안사는 과거 투자기업의 IP 신규창출 사례 및 금번 제안한 펀드에서 투자기업의 IP 신규 창출·활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서에 제시할 것, 만약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 요망

주8)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이 창출·출원·보유한(향후 창출·출원 포함) 해외 IP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

주9)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프로젝트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문화	스포츠	영화	과기 정통	환경	특허
창업초기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한정)	○	○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	○		○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출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	○	○	○	○	○
문화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출자참여 규모에 따라 차등 우대)	○	○			○	○
본점 또는 지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운용사인 경우	○	○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게임, 청년콘텐츠)의 수도권 이외 지역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또는 지역 문화콘텐츠 ^{주3)} 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주1)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주2)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지원)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	○
제안사가 IP수익화·유동화, IP Sale & Licenses Back 분야에 투자실적이 있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영화진흥위원회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주1) 문화계정 분야 중 지역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문화계정 분야에 적용

주2) 문화계정 분야 중 다음 분야 제외 : ①게임, ②청년콘텐츠, ③콘텐츠 민간제안 분야 중 기업 지분투자(우선주,보통주, CB,BW 등, 프로젝트 투자 제외)만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주3) 지역 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 및 지역 문화콘텐츠란, 문화계정 지역콘텐츠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에서 명시한 정의와 동일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바.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

사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25배
 - ② 자기자본의 10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Σ(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업무정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특허계정의 경우, 모태펀드가 다른 출자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이 10% 이하이면 「신청자조합 규모에 따른 최소 인원 기준」과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선정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 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 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또한, 모태조합 출자자 요청시,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결성 시한 연장에도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출자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고문에 반영하여 출자 제한 면제 가능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예외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비율은 운용사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 <환경계정>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조건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table border="1" data-bbox="448 741 1401 1043"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th> </tr>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3">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 - <특허계정> 민간 출자자를 대상으로 상기 ①~③ 조건 중 운용사가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 우선수익배분 금액은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 하며,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관련 법령상 투자의무는 전체 규모에 적용)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closing이 조합 결성시한 내 이루어진 경우, 이후 Multi-closing은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가능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항 목	내 용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문화·특허계정)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은 2년 이상부터 조합 존속기간 내 운용사 자율제안 ○ (스포츠계정) 존속기간 5년 이상 8년이내, 투자기간 2년 이상 4년이내 ○ (영화계정) 존속기간 5년, 투자기간 4년 ○ (과기정통계정) 존속기간 7년, 투자기간 4년 <p>* 단 계정별로 기준규약(신규약)을 달리 설정할 수 있음</p>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특허계정 신청 운용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p>*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 -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계정>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4년 내 : 조합약정총액x2.0% 이하 - 결성일로부터 4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x2.0% 이하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특허·문화·영화계정 <p>*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p>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기정통 : 0% 이상 ○ 문화·영화계정 : 2% 이상 ○ 특허계정·환경·스포츠계정 : 3% 이상 <p>*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 단 모태펀드 풀옵션을 부여할 경우 미적용</p>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단, 문화·영화계정은 수익의 30% 이내 ○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특허·문화·영화계정 <p>*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주)} (관리보수율을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때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조정)</p>

항 목	내 용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계정>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과기정통계정>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4대보험 기준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문화·환경계정>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IP서비스기업·IP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이하, 특허투자액)과 해외IP수익화*·IP출원지원투자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업무집행조합원 지급액 : $\text{Min} \left[(10\%, 10\% \times \frac{\text{특허투자실적비율}}{80\%}) \right]$</p> <p style="text-align: center;">특허투자실적비율 : $\frac{(\text{특허투자액} + \text{해외IP수익화 투자 및 IP출원지원투자액})}{\text{최소결성금액}}$</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가 창출·출원·보유한(향후 창출·출원 포함) 해외 IP를 수익화하는 프로젝트 ** 국내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 ※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모태펀드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인센티브의 적용은 제안 내역에 따라서 출자심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적용 가능 ○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한국벤처투자가 본 공고를 통해 명시한 주목적 투자대상 외에 정부(지방정부 포함) 또는 산하기관 유한책임조합원이 투자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투자조건에 따른 투자의무금액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정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추가 투자조건(예: 특정 지역 소재기업 또는 특정 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투자의무금액은 추가 투자조건을 동의하는 조합원(업무집행조합원 포함)들의 출자약정액 합계 이하로 정함</p> </div>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계정 프로젝트 투자시 다음 사항 적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2. 준수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의무설치(단, 자조합 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의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표준 계약서 적용 의무 대체 가능 - 공연예술 분야 투자시, 해당 공연의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div> ○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투자·배급·상영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합에 출자 금지 조합은 대기업 관련 프로젝트 투자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투자 및 10억원 미만 저예산영화의 투자·배급은 허용) 2. 계정 구분 운영 및 계정 별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자산은 조합 계좌 내 회계적으로 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3.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 의무 사항(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기업의 회계와 구분되는 프로젝트 별도 계좌에 투자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 금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 스태프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투자제작계약서 상 의무삽입 - 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 이상을 한국영화에 투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 '표준 시나리오, 근로, 상영, 투자 계약서' 의무 적용 (순제작비 10억 미만 저예산영화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단, 근로기준법 개정시 개정된 법률에 따름 - 중저예산영화는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 - 주요출자자(조합의 10% 이상 출자자) 관련 영화프로젝트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자일 경우에만(직접제작영화는 투자금지) 투자 허용하며 주요출자자들의 관련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조합 총 투자액의 50% 이내로 제한 - 동일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한도는 출자약정액의 20% 한도로 제한하며,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출자약정액의 10% 한도로 제한함(단, 조합원 전원 동의하에 인정가능) - 상기 투자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 지급을 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 </div>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필수	'19. 5. 20.(월) 9:00부터 '19. 5. 21.(화) 14:00까지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온라인, 현장 접수 운용사 모두 적용)	
선택1	'19. 5. 20.(월) 9:00부터 '19. 5. 21.(화)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상세내용 18페이지 참조
선택2	'19. 5. 22.(수) 9:30부터 '19. 5. 22.(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 (현장)	
선정	'19. 6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19. 9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분야는 접수마감일정을 6월 말까지 별도 공지 예정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접수 선택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를 권장** (차기 출자사업부터 온라인 접수만 시행 예정)

가. [필수] 기본정보 온라인 신청 (온라인, 현장 접수 운용사 모두 적용)

: 별첨1(출자신청서) 내용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에 온라인으로 기본정보 신청

- * 현재 시스템 개발 중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매뉴얼은 5. 10(금) 이후에 당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

나. [선택1]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3.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본 3부, USB메모리를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다. [선택2]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2.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http://install.k-vic.co.kr>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5. 8.(수) 15: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16 VR빌딩 지하1층 블루룸
- ※ 설명회 참석 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문의 방법

가. 문화·영화·스포츠계정 : 02-2156-2096, yeonkyung.ji@k-vic.co.kr

나. 과기정통계정 : 02-2156-2079, kmc@k-vic.co.kr

다. 환경 계정 : 02-2156-2189, wc47@k-vic.co.kr

라. 특허 계정 : 02-2156-2060, msx2forever@k-vic.co.kr

마.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5. 3.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최대주주 재무평가	최대주주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	회사 재무적 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
	조합운용실적	조합 수익성에 대한 평가
	투자실적	투자소진율 평가(조합 및 핵심인력 기준)
	준법성	최근 3개년 관련 법규 등 위반내용 등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경력,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팀웍 및 관리능력	중도이직 및 근속, 임직원 제재 사항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 신설 및 소형(운용 중인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 원 미만인 운용사) 창투사 및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